

# 노원구보

노원구 홈페이지 | [www.nowon.kr](http://www.nowon.kr)

제2323호

2026. 6. 4.(목)



노원구 전경

- ※ 노원구보 게재를 의뢰하는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 ◎ 구보의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won.kr> (노원소개→알림마당→노원구보)>
- ◎ 구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날 발행합니다.
- ◎ 구보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보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합니다.
- ◎ 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116-3414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행인 : 노 원 구 청 장  
편집인 : 미디어홍보담당관 정 윤 경  
전 화 : 02-2116-3414

# 차 례

## 고 시

- 제2026-43호 하계장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 3
- 제2026-44호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 7
- 제2026-4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1

## 공 고

- 제2026-99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2
- 제2026-993호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28
- 제2026-997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36

## 인 사

## 고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43호

## 하계장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통보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73번지 하계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예정지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하계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노 원 구 청 장

### 1.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사항

가. 구역경계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73

나. 구역면적 : 65,069.7㎡ ※ 정비구역 지정 전으로 향후 변동 가능성 있음

다. 사무실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섭발로 196, 단지내상가 B09호

라. 토지등소유자 수 : 1,895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함  
마.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 연번 | 직책    | 이름  | 주 소                             |
|----|-------|-----|---------------------------------|
| 1  | 위 원 장 | 김제현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섭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9동 |
| 2  | 감 사   | 박완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3길32            |
| 3  | 추진위원  | 노정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섭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1동 |
| 4  | 추진위원  | 박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섭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1동 |
| 5  | 추진위원  | 원도연 | 경기도 동두천시 못골로10, 브라운스톤인터포레 105동  |
| 6  | 추진위원  | 박용문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섭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1동 |
| 7  | 추진위원  | 김태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길 78-5           |
| 8  | 추진위원  | 전병일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섭발로 229, 극동아파트 4동     |
| 9  | 추진위원  | 김신옥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섭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2동 |

| 연번 | 직책   | 이름   | 주 소                                  |
|----|------|------|--------------------------------------|
| 10 | 추진위원 | 박관숙A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2동      |
| 11 | 추진위원 | 김수미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2동      |
| 12 | 추진위원 | 윤환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40, 청구푸른마을 102동      |
| 13 | 추진위원 | 이지현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56번지 은빛2단지 202동      |
| 14 | 추진위원 | 박홍식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2동      |
| 15 | 추진위원 | 박주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2동      |
| 16 | 추진위원 | 장현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2동      |
| 17 | 추진위원 | 안효근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2동      |
| 18 | 추진위원 | 민순홍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마길 16                 |
| 19 | 추진위원 | 민혜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파크리오 217동        |
| 20 | 추진위원 | 김태순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59, 월계미성아파트 12동        |
| 21 | 추진위원 | 한성신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2동      |
| 22 | 추진위원 | 김현중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2동      |
| 23 | 추진위원 | 안상근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2동      |
| 24 | 추진위원 | 김기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3동      |
| 25 | 추진위원 | 김형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3동      |
| 26 | 추진위원 | 선종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5동      |
| 27 | 추진위원 | 문영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1동      |
| 28 | 추진위원 | 강목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4, 대우효령아파트 105동       |
| 29 | 추진위원 | 임성미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51길 17, 화랑타운아파트 708동    |
| 30 | 추진위원 | 강경효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3동      |
| 31 | 추진위원 | 김용미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3동      |
| 32 | 추진위원 | 강창선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3동      |
| 33 | 추진위원 | 문상근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3동      |
| 34 | 추진위원 | 윤혜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9길 28, 하계미성아파트 2동      |
| 35 | 추진위원 | 이재원B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4동      |
| 36 | 추진위원 | 장호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송인로 50, 래미안길음센터피스 117동     |
| 37 | 추진위원 | 강보중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4동      |
| 38 | 추진위원 | 박양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7동      |
| 39 | 추진위원 | 이성숙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4동      |
| 40 | 추진위원 | 조준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4동      |
| 41 | 추진위원 | 김옥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4동      |
| 42 | 추진위원 | 양재성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길 70                |
| 43 | 추진위원 | 이승익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4동      |
| 44 | 추진위원 | 김현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4동      |
| 45 | 추진위원 | 양상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4동      |
| 46 | 추진위원 | 박미애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4동      |
| 47 | 추진위원 | 이정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 60, 휘경에스케이뷰 105동      |
| 48 | 추진위원 | 이재영A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5동      |
| 49 | 추진위원 | 서정민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5동      |
| 50 | 추진위원 | 이명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9길 28, 하계미성아파트 7동      |
| 51 | 추진위원 | 노병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5동      |
| 52 | 추진위원 | 박지형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143-1, 수유벽산아파트 10동    |
| 53 | 추진위원 | 이정희D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6, 학여울청구아파트 108동 |
| 54 | 추진위원 | 윤혜진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6동      |

| 연번 | 직책   | 이름   | 주 소                                   |
|----|------|------|---------------------------------------|
| 55 | 추진위원 | 최호성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6동       |
| 56 | 추진위원 | 윤주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103, 동아청솔아파트 111동     |
| 57 | 추진위원 | 안재선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6동       |
| 58 | 추진위원 | 송희범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6동       |
| 59 | 추진위원 | 김장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1동       |
| 60 | 추진위원 | 정은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7동       |
| 61 | 추진위원 | 이은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7동       |
| 62 | 추진위원 | 김옥자A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7동       |
| 63 | 추진위원 | 이해동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7동       |
| 64 | 추진위원 | 김진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7동       |
| 65 | 추진위원 | 조예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7동       |
| 66 | 추진위원 | 박윤옥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8동       |
| 67 | 추진위원 | 김경진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8동       |
| 68 | 추진위원 | 김용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8동       |
| 69 | 추진위원 | 송정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8동       |
| 70 | 추진위원 | 양용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8동       |
| 71 | 추진위원 | 유승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9동       |
| 72 | 추진위원 | 박진경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0동       |
| 73 | 추진위원 | 서광석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0동       |
| 74 | 추진위원 | 장남국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0동       |
| 75 | 추진위원 | 서혜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0동       |
| 76 | 추진위원 | 이귀조  |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6길 17, 주공아파트 1711동      |
| 77 | 추진위원 | 김주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0동       |
| 78 | 추진위원 | 송광민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1동       |
| 79 | 추진위원 | 유동석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1동       |
| 80 | 추진위원 | 이정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1동       |
| 81 | 추진위원 | 이상원A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6동       |
| 82 | 추진위원 | 김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1동       |
| 83 | 추진위원 | 정연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1동       |
| 84 | 추진위원 | 김세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1동       |
| 85 | 추진위원 | 박호옥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1동       |
| 86 | 추진위원 | 유윤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1동       |
| 87 | 추진위원 | 이광우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가길 10, 청솔아파트 805동       |
| 88 | 추진위원 | 이훈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15길 25, 월계한일1차아파트 101동   |
| 89 | 추진위원 | 이호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2동       |
| 90 | 추진위원 | 오수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2동       |
| 91 | 추진위원 | 이준우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9길 28, 하계미성아파트 6동       |
| 92 | 추진위원 | 김희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2동       |
| 93 | 추진위원 | 김경미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2동       |
| 94 | 추진위원 | 나응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39, 풍림아파트 106동         |
| 95 | 추진위원 | 황기섭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2동       |
| 96 | 추진위원 | 장기풍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2동       |
| 97 | 추진위원 | 신은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175, 백송마을7단지아파트 709동 |
| 98 | 추진위원 | 신종인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3동       |
| 99 | 추진위원 | 권순익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6, 학여울청구아파트 116동  |

| 연번  | 직책   | 이름  | 주 소                                     |
|-----|------|-----|-----------------------------------------|
| 100 | 추진위원 | 이은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3동         |
| 101 | 추진위원 | 이청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3동         |
| 102 | 추진위원 | 박병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27길32                     |
| 103 | 추진위원 | 강성록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9, 행당대림아파트 134동          |
| 104 | 추진위원 | 허성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3동         |
| 105 | 추진위원 | 박제봉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3동         |
| 106 | 추진위원 | 백성흠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4동         |
| 107 | 추진위원 | 김정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4동         |
| 108 | 추진위원 | 남진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장미상가                 |
| 109 | 추진위원 | 서희선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5동         |
| 110 | 추진위원 | 조예라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15동         |
| 111 | 추진위원 | 양귀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26, 신봉마을엘지자이1차아파트 118동 |
| 112 | 추진위원 | 양미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196, 장미상가                 |

2.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일자 : 2026년 5월 29일

3. 구역경계의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44호

##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8-3번지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노 원 구 청 장

### 1.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사항

가. 구역경계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8-3

나. 구역면적 : 102,380.8㎡

다. 사무실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8길 35, 원홍상가 403호-3

라. 토지등소유자 수 : 2,677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함  
마.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 연번 | 직책   | 이름  | 주 소                                 |
|----|------|-----|-------------------------------------|
| 1  | 위원장  | 변홍섭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10동        |
| 2  | 감사   | 이병성 | 경기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171                   |
| 3  | 추진위원 | 이규상 | 경기 구리시 산마루로46 스타힐스아파트 402동          |
| 4  | 추진위원 | 최은호 | 서울 도봉구 도봉로 136길 111. 창동2차아파트 204동   |
| 5  | 추진위원 | 이환주 |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84, 상계주공6단지 601동       |
| 6  | 추진위원 | 이희숙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03동        |
| 7  | 추진위원 | 박주현 | 전남 광양시 폭포사랑길 91. 목화연립 27동           |
| 8  | 추진위원 | 이창형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03동        |
| 9  | 추진위원 | 김종형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03동        |
| 10 | 추진위원 | 이경자 | 인천 동구 금곡로 11번길 10 아르누보오피스텔          |
| 11 | 추진위원 | 김남중 | 서울 노원구 노원로 532, 상계주공9단지 922동        |
| 12 | 추진위원 | 이현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46번길 100. 신한인스빌퍼스트파크 |
| 13 | 추진위원 | 최임엽 | 서울 관악구 온천로 93. 202동 (봉천동, 벽산아파트)    |

| 연번 | 직책   | 이름  | 주 소                                  |
|----|------|-----|--------------------------------------|
| 14 | 추진위원 | 박세준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05동         |
| 15 | 추진위원 | 송선길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2번길 135 신한아파트 101동    |
| 16 | 추진위원 | 윤윤심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05동         |
| 17 | 추진위원 | 이영란 | 서울 서초구 우면동 코오롱아파트 103동               |
| 18 | 추진위원 | 박수용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05동         |
| 19 | 추진위원 | 박중순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05동         |
| 20 | 추진위원 | 박수현 |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2단지 223동                  |
| 21 | 추진위원 | 김영수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07동         |
| 22 | 추진위원 | 김희숙 | 서울 노원구 노원로 22길 34, 롯데우성 108동         |
| 23 | 추진위원 | 김중도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846, 107동            |
| 24 | 추진위원 | 조항길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4길                    |
| 25 | 추진위원 | 허다연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창곡동 kcc 웰츠타워)    |
| 26 | 추진위원 | 김대환 |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7 esa아파트 104동           |
| 27 | 추진위원 | 이남훈 | 전남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41 연향현대2차아파트 202동      |
| 28 | 추진위원 | 조창호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08동         |
| 29 | 추진위원 | 엄재희 |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길                       |
| 30 | 추진위원 | 전민식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09동         |
| 31 | 추진위원 | 최성용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09동         |
| 32 | 추진위원 | 강혜숙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10동         |
| 33 | 추진위원 | 김경희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10동         |
| 34 | 추진위원 | 김태영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10동         |
| 35 | 추진위원 | 진수근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10동         |
| 36 | 추진위원 | 박인식 | 경기 포천시 이동면 도리돌길 19                   |
| 37 | 추진위원 | 한주성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10동         |
| 38 | 추진위원 | 최향숙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10동         |
| 39 | 추진위원 | 엄창자 |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815(명지캐럿 108)            |
| 40 | 추진위원 | 박정임 |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6가길16 나동(상계동 신아빌라)      |
| 41 | 추진위원 | 윤준구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12동         |
| 42 | 추진위원 | 김효선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67 래미안장안2차 204동       |
| 43 | 추진위원 | 최용희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12동         |
| 44 | 추진위원 | 유재창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12동         |
| 45 | 추진위원 | 구대완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12동         |
| 46 | 추진위원 | 최영길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수곡도창장 73                 |
| 47 | 추진위원 | 이미경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14동         |
| 48 | 추진위원 | 서준호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40 203동            |
| 49 | 추진위원 | 이성재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14동         |
| 50 | 추진위원 | 김쌍이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15동         |
| 51 | 추진위원 | 노경한 | 서울 도봉구 덕릉로 60나길 10-6 명승팰리스           |
| 52 | 추진위원 | 송향옥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
| 53 | 추진위원 | 원영준 | 전북 부안군 보안면 영전길 9                     |
| 54 | 추진위원 | 김재민 | 경기 양주시 회천남로 49 대방노블랜드                |
| 55 | 추진위원 | 박미란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
| 56 | 추진위원 | 김현진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220. 110동             |
| 57 | 추진위원 | 김금희 | 경기 남양주시 백봉로 32 108동(호평동, 두산알프하임)     |
| 58 | 추진위원 | 김규자 | 서울 도봉구 마들로 616. 203동( 방학동 대상타운현대아파트) |

| 연번  | 직책   | 이름  | 주 소                                 |
|-----|------|-----|-------------------------------------|
| 59  | 추진위원 | 이실경 | 경북 구미시 선기로3길 51 금오산금호어울림 103동       |
| 60  | 추진위원 | 이현순 |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상계동, 수락리버시티 3단지) 306동 |
| 61  | 추진위원 | 송문원 | 서울 강북구 인수동 삼각산로 4나길 16 b동           |
| 62  | 추진위원 | 장준영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17동        |
| 63  | 추진위원 | 권중혁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89 동천더샵이스트포레 104동    |
| 64  | 추진위원 | 서영덕 | 서울 노원구 중계로 14나길 25 삼성아파트 105동       |
| 65  | 추진위원 | 이진희 | 인천 부평구 갈월동로 42 1동                   |
| 66  | 추진위원 | 이우진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19동        |
| 67  | 추진위원 | 이인목 | 서울 성북구 송인로 2길 61 동부아파트 104동         |
| 68  | 추진위원 | 임원주 |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0 상계주공6단지 619동         |
| 69  | 추진위원 | 박중환 | 부산 해운대구 중동 1793. 래미안해운대아파트 101동     |
| 70  | 추진위원 | 조수환 | 경기 부천시 상일로 72. 반달마을극동아파트 1837동      |
| 71  | 추진위원 | 이종만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20동        |
| 72  | 추진위원 | 정주섭 | 서울 도봉구 해등로 26길 20 금호1차아파트 5동        |
| 73  | 추진위원 | 이경미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20동        |
| 74  | 추진위원 | 엄증자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09동        |
| 75  | 추진위원 | 최덕임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21동        |
| 76  | 추진위원 | 손영재 | 서울 노원구 상계로5길12 동양메이저아파트 101동        |
| 77  | 추진위원 | 도주현 | 서울 노원구 상계동 757 한양아파트 6동             |
| 78  | 추진위원 | 배상철 | 서울 노원구 노원로26가길7 102동(상계동, 코오롱아파트)   |
| 79  | 추진위원 | 김진호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23동        |
| 80  | 추진위원 | 이미란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23동        |
| 81  | 추진위원 | 조황목 |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 10(용현동, 탑석센트럴자이) 1112동  |
| 82  | 추진위원 | 유은숙 | 서울 노원구 상계로1길92 상계주공7단지 719동         |
| 83  | 추진위원 | 김형숙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25동        |
| 84  | 추진위원 | 서강민 | 서울 도봉구 도봉로 591-6                    |
| 85  | 추진위원 | 박명규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25동        |
| 86  | 추진위원 | 김옥자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25동        |
| 87  | 추진위원 | 권기복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25동        |
| 88  | 추진위원 | 김여학 | 서울 노원구 상계로5길12 동양메이저아파트 105동        |
| 89  | 추진위원 | 정성환 | 서울 노원구 중계로 172-13 현대3차아파트 101동      |
| 90  | 추진위원 | 이재춘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26동        |
| 91  | 추진위원 | 조성희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26동        |
| 92  | 추진위원 | 이재원 |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132번길5 거성수락아파트 102동 |
| 93  | 추진위원 | 강태희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27동        |
| 94  | 추진위원 | 강춘수 | 전남 강진군 성전면 달빛한옥길 17                 |
| 95  | 추진위원 | 박연수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27동        |
| 96  | 추진위원 | 유재수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27동        |
| 97  | 추진위원 | 강성순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28동        |
| 98  | 추진위원 | 김옥숙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628동        |
| 99  | 추진위원 | 안선영 | 서울 성북구 장월로 122(장위동)                 |
| 100 | 추진위원 | 김영룡 | 서울 노원구 석계로49(월계동) 월계현대아파트 106동      |

2.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일자 : 2026년 3월 20일

### 3. 구역 경계의 위치(안)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 - 45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 노 원 구 청 장

#### ○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br>고시일   | 도로명주소<br>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1  | 상계동<br>710-1 | 노해로77길 14-2 | 2010. 6. 4.  | 2026. 6. 4.  | 건물번호 부여 신청 |
| 2  | 중계동<br>210-7 | 덕릉로 639     | 2009. 7. 10. | 2026. 6. 4.  | 건물번호 부여 신청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2116-3611)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 99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 보완 등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2조의2)

나.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의 직위 조정(안 제5조)

다. 심의회 기능, 구성 정비 및 임기 사항 추가(안 제6조)

라.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의3~제6조의6)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토목과,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별관 3층(상계동 701-1), 우: 01689, 전화: 2116-4155, FAX: 2116-4643, 이메일: baek7412@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 보완 등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2조의2)

나.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의 직위 조정(안 제5조)

다. 심의회 기능, 구성 정비 및 임기 사항 추가(안 제6조)

라.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의3~제6조의6)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완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원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를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노원구”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그 밖의 수익금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시계획국장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처리하여야”를 “회계처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를 “구 금고에 예치·관리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노원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 “운용관리를”을 “관리·운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로굴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굴착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명”을 “11명”으

로, “구성하며,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를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소속 기금 운용 관련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3.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4(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5(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굴착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의6(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u> -----<br>-----<br>----- <u>위하여</u> -----<br>-----<br>-----<br>-----<br>----- |
|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br>-----<br>-----<br>-----.                                                                 |
|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u>노원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u>                                                                                           | 1. -----<br><u>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u> -----                                                                |
| 2. (생략)<br><u>&lt;신 설&gt;</u>                                                                                                               | 2. (현행과 같음)<br>3. <u>그 밖의 수익금</u>                                                                             |
|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u> 」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u>                    |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

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도시계획국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토목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4. (생략)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

② -----  
-- 회계처리해야 ----.

③ ---- 구금고에 예치·관리해야 ----.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관리·운용을 -----  
-----.

② ----- 도로굴착 업무 담당 과장----- 도로굴착 업무 담당 팀장-----.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4.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위원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신 설>

③ -----  
----- 11명 -----  
-----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 위원이 3분의 1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소속 기금 운용 관련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3.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4(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신 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  
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  
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2호의 사업 중 단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6조의5(간사) 심의회에 심의회  
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굴착 업무 담  
당 팀장이 된다.

제6조의6(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제7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의 기금운용결산서 및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다  
음 회계연도 80일 이내에 구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운용결산서 및 해당연도 기금운  
용계획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  
라 이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익·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  
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견제출서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 993호

##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노 원 구 청 장

### 1. 폐지이유

기금 운용 관련 절차 및 세부 사항이 상위 법령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시행규칙 운영 없이도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복 규정인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토목과,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별관 3층(상계동 701-1), 우: 01689, 전화: 2116-4155, FAX: 2116-4643, 이메일: baek7412@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1. 폐지이유

기금 운용 관련 절차 및 세부 사항이 상위 법령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시행규칙 운영 없이도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복 규정인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대상아님

2) 성별영향평가 : 대상아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폐지 규칙안 전문

##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7. 29.]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860호, 2021. 7.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관리과장, 토목과장 및 치수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팀장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 연도 기금운용기본계획심의를 위해 하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

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그외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제6조(위원회 운영)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조례 제4조 각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제7조(기금의 정산) ① 기금사용 주관과장은 사업종료후 20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잔액과 함께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

제9조(준용)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의견제출서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안에 대한 의견조회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과 관련하여 위  
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 997호

##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9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노 원 구 청 장

### 1. 안 건 명

| 연번 | 안건명                                                                                                                | 주요내용                                                                                                                                                                                                                                                                                                                                                   |
|----|--------------------------------------------------------------------------------------------------------------------|--------------------------------------------------------------------------------------------------------------------------------------------------------------------------------------------------------------------------------------------------------------------------------------------------------------------------------------------------------|
| 1  | <p><b>예 산 안</b></p> <p><input type="checkbox"/>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br/>(소관부서 : 기획예산과)</p>                         | <p><b>1. 제안이유</b><br/>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p> <p><b>2. 주요내용</b><br/>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 특별회계) 의결</p>                                                                                                                                                                                                             |
| 2  | <p><b>의 건 청 취 안</b></p> <p><input type="checkbox"/> 월계삼호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br/>(소관부서 : 재건축사업과)</p> | <p><b>1. 제안이유</b><br/>우리구 월계동 12번지 월계삼호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p> <p><b>2. 주요내용</b><br/>가. 대상지 현황<b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12번지 일대</li> <li>○ 면 적 : 40,243.2㎡</li> <li>○ 규 모 : 910세대 / 8개동 / 14층</li> </ul> 나. 정비계획(안)<br/>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등</p> |

| 연번 | 안건명                                                                                                           | 주요내용                                                                                                                                                                                                                                                                                                                                                                              |
|----|---------------------------------------------------------------------------------------------------------------|-----------------------------------------------------------------------------------------------------------------------------------------------------------------------------------------------------------------------------------------------------------------------------------------------------------------------------------------------------------------------------------|
| 3  | <p><b>의견청취안</b></p> <p><input type="checkbox"/>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br/>(소관부서 : 재건축사업과)</p> | <p><b>1. 제안이유</b><br/>우리구 월계동 13번지 일원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p> <p><b>2. 주요내용</b><br/>가. 대상지 현황<b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13번지 일대</li> <li>○ 면 적 : 232,298.6㎡</li> <li>○ 규 모 : 3,930세대 / 39개동(비주거 4동, 공공청사 3동 포함) / 14층</li> </ul> 나. 정비계획(안)<br/>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등</p> |
| 4  | <p><b>의견청취안</b></p> <p><input type="checkbox"/>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br/>(소관부서 : 재건축사업과)</p> | <p><b>1. 제안이유</b><br/>우리구 하계동 256-5번지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p> <p><b>2. 주요내용</b><br/>가. 대상지 현황<b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6-5번지</li> <li>○ 면 적 : 33,524.2㎡</li> <li>○ 규 모 : 498세대 / 8개동 / 15층</li> </ul> 나. 정비계획(안)<br/>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등</p>                           |
| 5  | <p><b>의견청취안</b></p> <p><input type="checkbox"/> 하계한신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br/>(소관부서 : 재건축사업과)</p> | <p><b>1. 제안이유</b><br/>우리구 상계동 135번지 일원 상계한신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p> <p><b>2. 주요내용</b><br/>가. 대상지 현황<b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35번지</li> <li>○ 면 적 : 16,145.0㎡</li> <li>○ 규 모 : 420세대 / 6개동(주거4동/비주거2동) / 15층</li> </ul> 나. 정비계획(안)<br/>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등</p>              |

| 연번 | 안건명                                                                                                           | 주요내용                                                                                                                                                                                                                                                                                                                                                                 |
|----|---------------------------------------------------------------------------------------------------------------|----------------------------------------------------------------------------------------------------------------------------------------------------------------------------------------------------------------------------------------------------------------------------------------------------------------------------------------------------------------------|
| 6  | <p><b>의견청취안</b></p> <p><input type="checkbox"/> 하계한신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br/>(소관부서 : 재건축사업과)</p> | <p><b>1. 제안이유</b><br/>우리구 상계동 451번지 일원 상계한신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p> <p><b>2. 주요내용</b><br/>가. 대상지 현황<b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51번지</li> <li>○ 면 적 : 16,121.0㎡</li> <li>○ 규 모 : 471세대 / 4개동(주거3동/비주거1동) / 15층</li> </ul> 나. 정비계획(안)<br/>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등</p> |

2. 공고방법 : 노원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3.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비치함. 끝.

## 인 사

### 노 원 구

(발령 제144호)

| 구분 | 성 명   | 발 령 내 용                                                                               | 현 직             |                    |
|----|-------|---------------------------------------------------------------------------------------|-----------------|--------------------|
|    |       |                                                                                       | 소 속             | 직 급                |
| 1  | 민 지 현 | 지 방 행 정 사 무 관 에 임 함<br>「지방공무원법」 제 66 조의 2 규정에 따라<br>그 직을 면함(퇴직일 : 2026. 5. 31.)       | 감사담당관           | 지 방 행 정<br>주 사     |
| 2  | 송 미 영 | 지 방 시 설 주 사 ( 지 적 ) 에 임 함<br>「지방공무원법」 제 66 조의 2 규정에 따라<br>그 직을 면함(퇴직일 : 2026. 5. 31.) | 도시계획국<br>부동산정보과 | 지 방 시 설<br>주사보(지적) |

2026. 5. 31.字.

### 노 원 구

(발령 제146호)

| 성 명   | 발 령 내 용                                                     | 현 직                    |                      |
|-------|-------------------------------------------------------------|------------------------|----------------------|
|       |                                                             | 소 속                    | 직 급                  |
| 엄 태 현 | 근무기간 만료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br>(근무기간 : 2023. 6. 1. ~ 2026. 5. 31.) | 미 래 교 육 국<br>미 래 교 육 과 | 지방시간선택제<br>임 기 제 라 급 |
| 송 영 주 | 근무기간 만료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br>(근무기간 : 2022. 6. 1. ~ 2026. 5. 31.) | 보 건 소<br>상제보건지소        | 지방시간선택제<br>임 기 제 라 급 |

2026. 6. 1.字.

### 노 원 구

(발령 제147호)

| 성 명   | 발 령 내 용                                                                                                               | 현 직                  |                      |
|-------|-----------------------------------------------------------------------------------------------------------------------|----------------------|----------------------|
|       |                                                                                                                       | 소 속                  | 직 급                  |
| 구 화 랑 | 지 방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다 급<br>( 안 전 관 리 자 ) 에 임 함<br>안전교통건설국 안전도시과 근무를 명함<br>(근무기간연장: 2026. 6. 1. ~ 2027. 5. 31., 주35시간) | 안전교통건설국<br>안 전 도 시 과 | 지방시간선택제<br>임 기 제 다 급 |

| 성명  | 발령내용                                                                                               | 현직             |                  |
|-----|----------------------------------------------------------------------------------------------------|----------------|------------------|
|     |                                                                                                    | 소속             | 직급               |
| 김승용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br>(초안산도자기체험장운영)에임함<br>힐링도시국여가도시과근무를명함<br>(근무기간연장: 2026. 6. 1. ~ 2027. 5. 31., 주35시간) | 힐링도시국<br>여가도시과 | 지방시간선택제<br>임기제마급 |
| 강원국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br>(응급구조사)에임함<br>보건소의약과근무를명함<br>(근무기간연장: 2026. 6. 1. ~ 2027. 5. 31., 주35시간)           | 보건소<br>의약과     | 지방시간선택제<br>임기제라급 |

2026. 6. 1.字.

노원구

(발령 제148호)

| 연번 | 성명  | 발령내용                  | 현직             |              |
|----|-----|-----------------------|----------------|--------------|
|    |     |                       | 소속             | 직급           |
| 당초 | 나운정 | 7급(지방사회복지주사보) 대우로 선발함 | 주민복지국<br>생활복지과 | 지방사회복지<br>서기 |
| 변경 | 나운정 | 7급(지방사회복지주사보) 대우로 선발함 | 주민복지국<br>통합돌봄과 | 지방사회복지<br>서기 |

2026. 6. 1.字.